# 2025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&D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

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202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## - 목 차 -

- 1. 사업개요
- 1-1. 사업목적
- 1-2. 지원대상분야
- 1-3.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2. 사업추진체계
- 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- 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- 3-2. 기술료 등 징수 기준
- 3-3.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
- 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- 4-1. 지원분야
- 4-2. 신청자격
- 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- 4-4.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
- 5. 평가절차 및 기준
- 5-1. 평가절차
- 5-2. 평가기준(감점기준 포함)
- 6. 근거법령 및 규정
- 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- 8. 제출 서류 사항
- 9. 기타 유의 사항
- 10.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
- 11. R&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
- 12. 문의처 등

#### 1. 사업개요

#### 1-1. 사업목적

o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로 고용,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

# 1-2. 지원대상분야

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(태양광/풍력/수소/연료전지)

# 1-3.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o 총 308억원 내외 지원

(단위: 억원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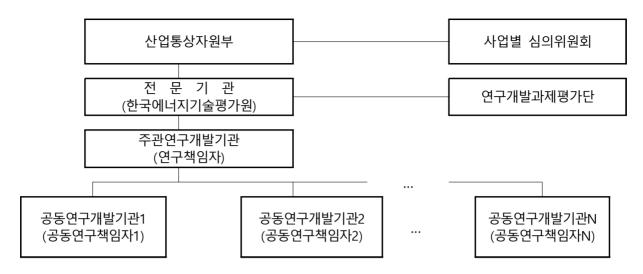
지원분야		세부사업명	지원예산 (정부지원 연구개발비)	대상연구 개발과제
재생		태양광	36	3
에너지	   신재생에너지	풍력	90	5
수소 에너지	ᅴ <u>- : 기</u> 오켓기기	수소	144	5
에너지		연료전지	38	2
합 계			308	15

공모방식	지원규모	지원기간
품목지정	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(분야별 예산 참조)	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(기술개요서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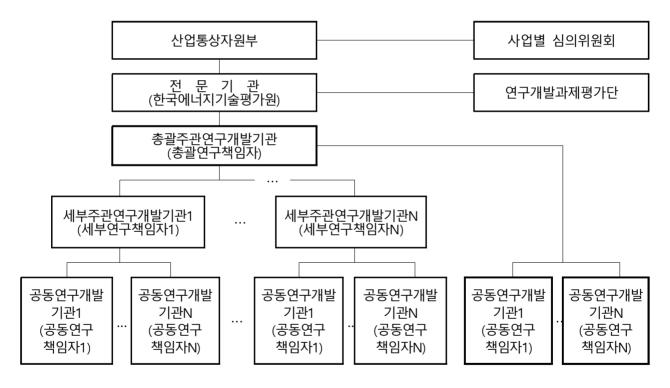
- \*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"품목지정"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(통합형은 1개로 구분)
- \*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
- \* 사업별 예산규모,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
- \*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

#### 2. 사업추진체계

0 일반형 과제



#### o 통합형



#### 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
#### 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
#### 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

#### ① 연구개발비 구성

-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· 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)로 구성
-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, 세부내용은 "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수행기간(연차) 산정" 안내사항 참조
-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  - **수요기업**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
  - \* "수요기업"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**참여기업**을 말함(**참여기업**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)
  - \*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
-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, 산업위기소재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(단, 중복으로 적용 불가)

####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
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 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
연구개발기관 <sup>1)</sup> 유형		연구개발과제 유형		
		원천기술형	혁신제품형(실증형포함)*	
중:	소 · 중견기업이	해당 연구개발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	
	아닌 기업	연구개발비의 50% 이하	33% 이하	
	평균매출액 <sup>3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	
중견	등이 3천억원 이상	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50% 이하	
기업 <sup>2)</sup>	평균매출액 <sup>3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	
	등이 3천억원 미만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67% 이하	
	중소기업 <sup>4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	
중소기합	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67% 이하	
7.0		해당 연구개발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	
	그 외	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	100% 이하	

- 1) "연구개발기관"이란 연구개발괴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
- 2) "중견기업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
- 3) "평균매출액" 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 등의 산정) 기준에 따라 산정

- 4)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임
  - \* 혁신제품형 과제는 "실증형과제"를 포함하며, "실증형과제"란 RFP(기술개요서) 내 연구개발 과제 유형을 "실증형"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
    -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. 단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
    -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\* 중,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로 할 수 있으며, 산업위기지역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% 이하로할 수 있음
      - \* "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"이란,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 제2항, 제9조 제2항, 제10조 제6항 및 제8항,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, 제7조 제4항,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"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"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(지정기간에 한함)

#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

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, 연구개발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'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'은 아래 표를 따름

연구개발기관 유형		연구개발과제 유형		
		원천기술형	혁신제품형(실증형포함)	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		
중견	평균매출액 중견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			
기업	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	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	
중소기업	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		
그 외		필요시 부담		

- **수요기업**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. 단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

#### 3-2.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

o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 발기관'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(단, "4·1. 지원분야"의 "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"[붙임2]의 "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"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)

# □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

- o 연구개발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평가결과 '우수', '보통' 또는 '미흡'인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,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- \*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(수익)의 일부를 징수
- o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.

#### □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

o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

#### -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

분류		부과기준		기술료율	기술료 납부 상한
	중소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제3자 실시	중견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2/1	대기업·공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	중소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직접 실시	중견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 • 공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#### -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: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
-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

#### 3-3.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: 붙임1 참조

#### 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
# 4-1. 지원분야

# ◇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(가~다)으로 분류되며,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)

구분	연구개발과제유형		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가. 추진체계	나. 개발형태	다. 공모형태
A 04 7 7 7 1 H L 7 L T II	일반형	원천기술형	품목지정형
A연구개발과제	통합형	혁신제품형(실증형포함)	꿈득시경영

# □ 연구개발과제 유형 - 가 (추진체계)

- o **일반형 연구개발과제**: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
-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: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,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
  -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
  -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
  -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

# □ 연구개발과제 유형 - 나 (개발형태)

-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: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·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
- o **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** :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,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·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

- □ 연구개발과제 유형 다 (공모형태)
  -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: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(RFP) 제시 없이 품목(제품, 제품군)만 제시(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)
- □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: 붙임2 참조

## 4-2. 신청자격

#### 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

- o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,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제9의3부터 제9의5,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  - \*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(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가 있는 경우로 한함

# 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
- □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,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: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(단,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)
  - o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- o 접수마감일 기준, (주관/공동)연구개발기관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) 및 (주관/공동)연구개발기관의 장(단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), 연구책임자가(공동연구책임자 제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사전지원제외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 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#### 사전지원제외
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- 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
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

- 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
- 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P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- ※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
- 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
-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-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
- o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 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

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(한계기업)	연구개발과제 수
중견기업	4개까지 수행 가능
중소기업	2개까지 수행 가능

※ "한계기업"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지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

- 이때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'BBB'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
  - ※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
- 단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

# 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0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
-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0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o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 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
-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
-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,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(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)
- o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\*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 가능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,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)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 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

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한다.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
-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
-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(단,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 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)

#### 4-4.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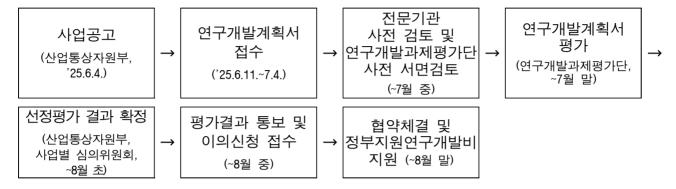
-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- ※ 정부에 의한 기 지원·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"정보자료실 → 사업정보자료 → 지원과제정보 검색"
- 타기관 공개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검색시스템 활용
- o 제기기간 : 2025. 6. 4.(수) ~ 2025. 6. 11.(수)
- o 제 기 처 : (06175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
- o 제기방법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## 5. 평가절차 및 기준

# 5-1. 평가절차

□ 평가절차

#### ① 품목지정형



- 사전검토 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이의신청 :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-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 · 심의
- ※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
- ※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# 5-2. 평가기준(감점기준 포함)

#### □ 평가항목

####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

0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

연구개발과제유형	평가항목	세부 항목
	기술성(60)	■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■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
	연구역량(20)	■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
원천기술형	사업화 및 경제성 (20)	■ 사업화 계획 및 의지 ■ 경제성 * 기술이전, 매출, 수익, 수입대체, 수출효과, 고용칭출 등 ■ 지역적 파급효과 * 자역 내직·긴접적 고용 증대, 생산성 항상 및 매출 증대 등

연구개빌	과제유형	평가항목	세부 항목
		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(적정/부적정)	● 안전조치 이행현황  * 연구시설/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(연구시설 및 장비(시제품 포함)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*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
		기술성(40)	■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■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
		연구역량(20)	■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
		사업화 및 경제성 (40)	■ 사업화 실적 ■ 사업화 계획 및 의지 ■ 경제성  * 기술이전, 매출, 수익, 수입대체, 수출효과, 고용칭출 등 ■ 지역적 파급효과  * 지역 내 직·간접적 고용 증대,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
혁신		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(적정/부적정)	● 안전조치 이행현황 * 연구시설/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(연구시설 및 장비(시제품 포함)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*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
제품형		기술성(50)	■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■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
		연구역량(15)	■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
	실증형 연구개발 과제	사업화 및 경제성 (35)	■ 사업화 실적 ■ 사업화 계획 및 의지 ■ 경제성 * 기술이전, 매출, 수익, 수입대체, 수출효과, 고용칭출 등 ■ 지역적 파급효과 * 지역 내 직·간접적 고용 증대,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
		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(적정/부적정)	■ 안전조치 이행현황  * 연구시설/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(연구시설 및 장비(시제품 포함)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*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

0 일반형 연구개발과제: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"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"로 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"지원제외"로 분류함. 평가점수가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,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선정함. 단,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
-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: 신청연구개발과제(총괄, 세부)의 개별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, 신청연구개발과제(총괄, 세부)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"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"로 분류함. 신청연구개발과제(총괄, 세부) 중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하는 경우(1개 연구개발과제 이상) 해당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"지원제외"로 분류함
- 평가점수(총점 평균)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(총점 평균), 기술성(총점 평균)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
- 단, 평가점수(총점평균)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(총점평균)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## 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

-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-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-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(3점)
- ※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주관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
- ※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- ※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,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

#### 6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**근거법령**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, 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

#### □ 관련규정

- o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「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」,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,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,
 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
#### 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
#### 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구분	연구개발계획서			
신청방법	- 계획서(필수서류)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- * 오프라인(방문) 서류제출 불필요			
공고기간	'25.6.4.(수) ~ 7.4.(금) 까지			
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	○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간 : '25.6.11.(수) ~ 7.4.(금) 18:00 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*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			
	○ 양식교부 및 안내 : - <b>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</b>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공지 · 공시(사업공고)			

# □ 전산 등록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www.iris.go.kr)

- ※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'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'을 조치하여야 함(첨부 매뉴얼 참조)
  - \* 필수이행사항 :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,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
  - \*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(확약서 제출 필수)
- ※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, <u>마감시간(18:00)이 지나면 접수</u>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(입력·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)

- ※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~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
- ※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8. 제출 서류 사항 : 붙임3 참조
- 9. 기타 유의 사항 : 붙임4 참조
- 10.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: 붙임5 참조
- 11. R&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: 붙임6 참조
- 12. 문의처 등
- □ 사업설명회
  - o 목적 : '25년도 2차 공고 신재생에너지R&D 신규지원 대상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방법 등을 안내
  - 0 개최 일자 및 장소

일자	지역	개최 장소	시간
′25.6.13(금)	서울	세텍(SETEC) 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2 (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)	14:00~16:00

- \*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
- \*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, 관련 자료는 온라인 배포예정
- \*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(주차비 미지원)
- □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,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공지·공시(사업공고) 참조
  - o 연구개발계획서
  - 전산 등록 관련 문의 : IRIS 고객센터(☎ 1877-2041, 042-862-1500)
  - 연구개발과제/접수·평가 관련 문의

담당부서	세부사업명		연구개발과제 (RFP/기술개요서) 문의	신청자격 · 접수 · 평가 문의
			연락처 (☎ 02-3469-0000)	
수소산업실	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	수소	8345	8348, 8343
		연료전지	8342	8349, 8895
재생 에너지실	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	태양광	8326	8323, 8329
		풍력	8322	8327, 8328, 8888

<sup>\*</sup>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(고객만족 콜센터)

고객센터 서비스	연락처
에너지 R&D 전화상담 서비스	1899-0784

# 붙임1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

# □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(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)

- o 청년인력(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,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(1개월 미만은 올림)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)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(기본채용 인원\*)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 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,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,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,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. 이때,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.
  - 기본채용 인원 :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합계액(계획금액 기준)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, 정부지원연구개발비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
  - 예시)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.5억 원인 경우,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

구분	1차[	<b>년도</b>	2차년	<b>년도</b>	3차년도		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해당연도	누적	해당연도 누적 해당		해당연도	누적	
정부지원연구개발비	3.5억	3.5억	5억	8.5억	4억	12.5억	
기본채용 인원	1명	1명	1명	2명	0명	2명	

#### □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

o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(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)는 인건비로 계상·집행 가능

#### □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

- 0 비영리기관 :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
- o 대학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,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등,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(박사후 연구자 등)
- o 외부 참여연구자 :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

- 0 영리기관(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)
-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)
  - ㆍ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-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
-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.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(단,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,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)
-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
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,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-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%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
-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.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 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

# □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
- o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 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(단,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 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),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 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
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4년 12월 4일)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
-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%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(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)

# □ 외주 용역비 산정

o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·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,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. 이때,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

#### □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

o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%이상 2%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

#### □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산정

0 "41. 지원분야"의 "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"[붙임2]에서 "표준화 연계형"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는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(1억원 이내)을 계상하여야 하며, 다른 항목으로 전용(변경)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

## □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

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,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(변경)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.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

# 붙임2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(전체)

	분야	연구개 발과제 명	연구개발 과제 유형		수행	'25년 정부	주관	중소	
세부 사업명			공모 형태	개 발 형태	기간 (년)	지원 연구 개발비 (억원)	연구 개발 기관	중견 참여 형태	연구개발 과제특성
		탠덤 모듈과 HJT 모듈의 출력향상을 위한 자외선 다운 컨버전 봉지재 필름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12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실증형, 혁신도전형
	태양광	페로브스카이트/결정질 실리콘 탠덤 모듈 성능 및 장기신뢰성 시험방법 개발 및 체계구축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17 내외	기업/ 시험 기관	주관/ 공동	표준연계
		페로브스카이트/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	품목 지정	원천 기술	3	7 내외	대학/ 연구소	공동	기술료비징수
		풍력 블레이드 생산성 및 재활용성이 향상된 아크릴계 열가소성 수지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15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실증형, 표준연계, 혁신도전형
	풍력	가상 풍력발전기 기반 지능형 운영 지원 솔루션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15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혁신도전형
		초대형 부유식 수직축 해상풍력 초기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	품목 지정	원천 기술	3	10 내외	명리	공동	기술료비징수
신재생		육상풍력용 6MW급 풍력터빈 개발 및 실증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30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실증형
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		풍력발전용 10MW급 SST 기반전력변환장치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20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실증형
	수소	(통합형/총괄)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26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초격차, 통합형, 실증형,
		(세부1)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스택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20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안전관리형, 앵커기업 육성형
		(통합형/총괄) Off-grid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 생산 플랜트 운영기술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22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초격차, 통합형, 실증형, 안전관리형
		(세부1) 알칼라인 수전해 부하대응 시스템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28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
		저온수전해 성능 및 내구성 평가 시험 프로토콜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20 내외	비영리	공동	안전관리형 기술료비징수
		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용 이·총전 안전장치 국산화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14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실증형, 샌드박스 연계형, 안전관리형
		선박용 수소층전소 기반기술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2	14 내외	제 한 없음	주관/ 공동	-

	분야		연구개발 과제유형		수행	'25년 정부	주관	중소	
세부 사업명 - <sup>[</sup>		연구개 발과제 명	공모 형태	개 발 형태	구항 기간 (년)	지원 연구 개발비 (억원)	연구 개발 기관	중견 참여 형태	연구개 발 과제 특성
	연료전지	고온 운전이 가능한 고출력 고내구성 연료전지 스택 단위셀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4	19 내외	제 한 없음	주관/ 공동	혁신도전형, 안전관리형
		연료전지 시장 확장을 위한 장수명 저비용 PEMFC 스택 개발	품목 지정	혁신 제품	3	19 내외	기업	주관/ 공동	안전관리형

- ※ 과제별 세부내용, 총수행기간,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반드시 참고
- ※ 실증형 연구개발과제는 [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] 을 따름
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
- ※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"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(연차) 산정"을 참조
- ※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,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로 구분하여야 함(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(5년 이상)하는 경우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)
- ※ 기업(중소중견 등),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
- ※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"붙임 4. 기타유의사항"을 참조

# 붙임3 제출 서류 사항

# □ 연구개발계획서

번호	서 류 명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	■ 전산파일 업로드(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)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)	■ 전산파일 업로드(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) ★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
3	연구개발계획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HWP)
4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■ 모든 신청 기관(기업 포함) 제출 * 기관(기업)별 낱장 제출 가능,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
5	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모든 기업 제출(해외기관 포함, 비영리는 면제)
6	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 *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
7	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
8	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	<ul> <li>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</li> <li>모든 신청 기관(기업 포함) 제출</li> <li>* 기관(기업)별 낱장 제출 가능</li> </ul>
9	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
10	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
11	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
12	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해당시 작성(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)
13	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필요시 작성
14	수요기업 확약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
15	R&D 자율성트랙(지정) 확인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초격차 프로젝트 과제인 경우 제출(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)
16	감점사항 확인서	■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해당시 작성(증빙서류와 함께 제출)
17	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■ 전산파일 업로드(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 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를 PDF로 스캔한 파일)  ★ 단,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■ 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소·코스닥) 미제출, 그 외 기업은 제출(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)  ★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(예,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, 2023년도, 2022년도, 2021년도 자료 제출)

- \* 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
- \*\* 연구개발과제참여자 :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
- \*\*\* 수요기업 :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기업
- \*\*\*\* 해당시/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'해당없음' 표시 파일로 갈음

# 붙임4 기타 유의 사항

# □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

- 0 "해외기관 참여 필수" 연구개발과제는 해외기관이 "국외기관" 또는 "연구개발기관 외 기관"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,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  -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,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
- 0 "기술료 비징수"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
- 0 "기술료 비징수"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,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
- 0 "기술료 비징수"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"기술료 징수" 연구개발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o "표준화 연계"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- 0 "실증형"의 경우「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」제51조의2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동안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(다만,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)
  -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,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  -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,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    - \* 실증설비 : 실증연구의 총수행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
    - \* 위험성 평가 :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,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
- 0 "안전관리형"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'붙임5'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시항을 추가 참고
- o "혁신도전형" 연구개발과제는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최초 또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·제품·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
  -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원천기술형으로 할 수 있음

- o "초격차" 연구개발과제는 핵심투자분야별 세계 최고·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인 임무지향 R&D를 통해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과제
  - R&D자율성트랙(지정)에 해당하며, 협약 이후 R&D자율성트랙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R&D자율성트랙 선정시 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 제 9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처리할 수 있음
    - \*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'R&D자율성트랙(지정) 확인서' 제출 필수(붙임 3 참고)
- o "규제샌드박스형" 연구개발과제는 실증 및 시장진입 시 발생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준비·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연계형 과제
  -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, 추진현황에 대한 진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음
- o "R&D자율성트랙"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, 선정기준 등은 [붙임6] (R&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) 및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참고
- 0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
- o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제시된 "중간 마일스톤"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(대체지표 및 목표 등)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
-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,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(연구비)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-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-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,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 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
-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,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(총 연구개발비의 30%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,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%까지 계상 가능. 다만,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)
  - 현물산정 :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% 이내 (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)
- ※ 기술매매: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, M&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
- ※ 기술 라이센싱(전용/통상 실시 포함):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(계약금, 착수료,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)

- 현금계상 :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
- o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"토론평가"를 적용할 수 있음(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)
-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-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o 진도점검 및 평가(단계·최종·특별)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-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(www.ketep.re.kr)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(RFP 또는 기술개요서) 참조

# 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(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)의 귀속

- 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
-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·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 - 단,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
#### □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

-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. 이때,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
  - 다만,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」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0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

## □ 보안등급 분류

-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0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 -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「대외무역법」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. 단,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·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

# □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

0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함(학생연구자는 제외)

#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

## □ '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' 정의

o 연구실,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

## □ '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' 대상 여부

0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, 기술개요서 참조

# □ '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' 주요 유의사항

- 0 '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' 및 '산업안전보건법'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·제출해야하며,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
-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·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
-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(연 1회 원칙)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,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(직접비 중 연구활동비)에서 지원 가능
  - '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'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
-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(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)하여 보고해야 함

# 붙임6 R&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

#### □ 제도개요

-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&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&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
  - \* 관련근거: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(2024.12.30.,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219호))
- R&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, 해당 과제가 R&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&D 수행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

#### □ 과제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

- R&D자율성트랙(일반):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'80점'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'우수'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신청 가능
  - \* 총괄 연구개발과제, 비공개(보안)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
- R&D자율성트랙(지정): 신규과제 공고시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
  - \* 국제공동연구, 챌린지트랙, 초격차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
  - \* 총괄 연구개발과제, 비공개(보안)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

#### □ 신청자 유형

- ① (영리기관) 기업(대·중견·중소)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(×××)-2자리(××)-5자리(×××××)에서 2자리가 82(비영리) 및 83(국가·지자체·지자체조합)이 아닌 기관
  -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
- ② (비영리기관) 대학, 연구소(정부출연研・민간생산研 등)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(×××)-2자리(××)-5자리(×××××)에서 2자리가 82(비영리) 및 83(국가·지자체·지자체조합)인 기관
  -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(과학기술인 등록번호)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

- □ 신청방법 : 협약 후 산업기술R&D정보포털(https://srome.keit.re.kr)에서 신청
  - \* 주의사항: 재무정보 입력시 '행추가'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(참여기관) 정보입력

#### □ 심의기준

- R&D자율성트랙(일반) :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
- R&D자율성트랙(지정) : ①재무건전성 및 ② R&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

## <R&D자율성트랙 심의기준>

#### ① 재무건전성

## (기업 대상)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

- 1.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
- 2.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
- 3. 부분자본잠식
- 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
- 5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"한정"
- \*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
- ② R&D역량

#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

- 1.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&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(비영리기관에 한함)
- 2.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(영리/비영리 모든 기관)

#### □ 지원내용

o 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제9조(R&D자율성트랙 특례)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

#### 주요 지원내용

-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
-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
- o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(부가세 포함)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
- o 연구개발비 내 비·세목 간 예산 변경
-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
- \*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주관·공동) 모두에 적용하며,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- \*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

#### □ 적용기간

- R&D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적용